

# 일본의 고지도·고문헌상의 「우산도=석도=독도」 부정에 대한 비판

- ‘죽도문제연구회’의 ‘100문 100답’을 중심으로 -

崔長根\*

(e-mail: nihonbu@daegu.ac.kr)

---

## 目次

---

1. 들어가면서
  2. ‘한국 고지도의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의 비판
  3. ‘막부의 도항금지령에는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의 비판
  4. ‘명치정부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적 없다’의 비판
  5. ‘1900년의 칙령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다’의 비판
  6. ‘1905년 일본의 죽도 편입조치는 정당했다.’의 비판
  7. 맺으면서
- 

## 1. 들어가면서

일본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가 집필한 책자 ‘100문100답’의 삽입 그림 지도에는 “죽도(독도)에서 한반도까지를 217km, 죽도에서 시마네현까지를 약 211km’라고 하여 독도가 일본영토에 더 가깝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 가깝기 때문에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사실 독도는 사람이 사는 한국의 울릉도에서 87.4km, 사람이 사는 일본의 오키섬에서 157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람의 가시거리 100km 이내의 울릉도에서는 보이고 오키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처럼 죽도문제연구회는 논리성도 없

---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일본정치전공

1) 죽도는 일본호칭 ‘다케시마(竹島)’를 말한다. 본문에서는 이를 ‘죽도’라고 표기한다.

이 무엇이든지 내세워 일본영토론을 주장하는데 급급하다.

죽도문제연구회가 제작한 '100문100답' 중에서 특히 '제8부 한국의 주장에 반론한다(2)'<sup>2)</sup>는 부분이 한국의 주장인 '우산도=석도=독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측과 일본 측에 있는 모든 독도 관련 사료는 '독도=한국영토'를 논증하는 것이다.<sup>3)</sup> 그런데 죽도문제연구회는 오히려 한일 양국에 존재하는 사료들은 모두 '독도=한국영토'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정한다.<sup>4)</sup> 그래서 본 연구는 죽도문제연구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본론인 2장에서는 '한국 고지도의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에 대한 비판으로 ①한국의 문헌이나 고지도에 보이는 '우산도(于山島)'는

- 
- 2) “73. 한국의 문헌이나 고지도에 보이는 '우산도(于山島)'는 죽도(竹島)인가?  
 74.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는 죽도인가?  
 75. 한국은 죽도의 명칭이 우산도→석도→독도로 변천했다고 하지만, 증거는 있는가?  
 76. 에도시대의 문헌에서는 죽도가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는가?  
 77. 伊能忠敬의 지도에서는 죽도가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는가?  
 78. 長久保赤水의 지도에서 죽도가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는가?  
 79. 林子平의 회도(그림지도)에서는 죽도가 일본의 지도에서 제외되었는가?  
 80.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을 때 죽도가 한국영토로 확인되었다'라는 한국 주장은 옳은가?  
 81. 에도막부의 울릉도도항금지령에서 죽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한국영토로서 간주되었는가?  
 82. 안용복이 '일본의 관백(쇼군)'에게 죽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도록 했다.'라는 한국의 주장은 올바른가?  
 83. 한국이 '죽도=조선영토'의 근거로 들고 있는 1877년의 태정관지령이란 무엇인가?  
 84. 한국의 1900년의 칙령에 있는 '석도'는 죽도인가?  
 85. 한국의 1900년의 칙령으로 죽도는 한국영토가 되었는가?  
 86. '이미 영토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1905년에 다시 영토편입조치를 취한 것은 불법인가?'”
- 3) 대표적인 선행연구로서, 송병기(1999) 『鬱陵島와 獨島』 단국대학교출판부. 송병기(2004) 『독도영유권 자료선』 자료총서34,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지식산업사. 内藤正中·金柄烈(2007) 『歴史的檢証獨島·竹島』岩波書店. 内藤正中·朴炳涉(2007) 『竹島=獨島論争—歴史から考える—』新幹社. 内藤正中(2011) 「1905年の竹島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4호등이 있다.
- 4) 대표적인 선행연구로서, 奥原碧雲(1906) 『竹島及鬱陵島』松江:報光社. 奥原碧雲(1906)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伝』. 奥原碧雲(1907) 「竹島沿革考」, 『歴史地理』 第8卷 第6号.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川上健三(1953) 『竹島の領有』日本外務省条約局. 島根県編=田村清三郎(1954) 『島根県竹島の研究』. 下条正男(2005)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下条正男(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親書377.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島根県総務部総務課 등이 있다.

죽도(竹島)인가? ②'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는 죽도인가? ③한국은 죽도의 칭이 우산도→석도→독도로 변천했다고 하지만, 증거는 있는가?에 대해 분석한다.

3장에서는 '일본 고지도의 독도는 일본영토이다'에 대한 비판으로 ①“에도 시대의 문헌에서는 죽도가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는가?” ②“伊能忠敬의 지도에서는 죽도가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는가?” ③“永久保赤水의 지도에서 죽도가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는가?” ④“林子平의 그림지도에서는 죽도가 일본의 지도에서 제외되었는가?”에 대해 분석한다. 4장에서는 '막부의 도항금지령에는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에 대한 비판으로 ①“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을 때 죽도가 한국영토로 확인되었다” ②“에도막부의 울릉도 도항 금지령에서 죽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한국영토로서 간주되었는가?” ③“안용복이 '일본의 관백(쇼군)'에게 죽도를 조선영토임을 인정하도록 했다'라는 한국의 주장은 올바른가?”에 대해 분석한다. 5장에서는 '명치정부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적이 없다'에 대해 비판했고, 6장에서는 '1900년의 칙령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다'에 대한 비판으로 ①“한국의 1900년의 칙령에 있는 '석도'는 죽도인가?” ②“한국의 1900년의 칙령으로 죽도는 한국영토가 되었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선행연구로서 죽도문제연구회가 발행한 '100문100답'이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를 비평한 연구가 없기에 더욱 흥미진진한 논증이 될 것이다.

## 2. '한국 고지도의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의 비판

(1) “한국의 문헌이나 고지도에 보이는 '우산도(于山島)'는 죽도(竹島)인가”에 대한 비판

이 글의 필자인 시모조<sup>5)</sup>는 우산도는 죽도가 아니라는 논거로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우산도는 안용복의 밀항사건 이전에 울릉도의 별칭이었으나, 안용복의 허위진술에 의해 “일본의 송도(독도-필자주)”로 되었다가, 또다시 울릉도에서 2km지점에 있는 '竹嶼'를 가리키게 되었다는 것이다.<sup>6)</sup> 시모조는 '송도가 우산도이라는 역사적 인식만 남아있다'라고 주장한다.<sup>7)</sup> 시모조는

5) 다쿠쇼쿠(拓殖)대학 국제개발학부 교수로서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을 맡고 있고, 2005년부터 시마네현을 움직여 죽도문제연구회를 조직하여 일본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독도정책을 선동하고 있다. 그는 오늘날 독도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시마네현에 소속된 대표적인 어용학자이다.

6)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WILL』 2014년3월호증간, ワック株式会社, 2014.3.14, p. 170-171.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조선조정에 의해 1770년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에서 '여지지가 말하기를 울릉, 우산 모두 우산국의 땅,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소위 송도이다.'라는 것에 대해, 한국이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의 분주에 의한 것이고 그것은 조선조정에 대해 안용복이 '돛토리번과 교섭하여 번주로부터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조선의 것이 되었다고 인정했다고 거짓된 증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8)</sup> 또 조선조정에 대해 '울릉도에서 일본어민을 만났을 때 송도는 우산도다. 그것도 조선의 땅이다'<sup>9)</sup>라고 하여 일본어민을 쫓았다고 공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죽도기사'에 의하면, '울릉도에서 일본어민을 만났을 때 송도는 우산도다. 그것도 조선의 땅이다'라고 한 것은 1693년의 안용복의 체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용복은 그때 울릉도의 동북에 있는 큰 섬을 목격하고 함께 건너가 조선어민으로부터 그것이 우산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후 안용복은 돛토리번 요나고의 오야가문사람들에 의해 일본에 연행되는 도중 안용복은 황혼의 해상에서 울릉도보다도 더 큰 섬을 발견했다(變例集要)고 진술함으로써 당시 조선국에서는 안용복의 증언에 의해 우산도가 '송도' 즉 지금의 '죽도'(독도)가 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sup>10)</sup>

시모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즉 1690년대의 안용복사건과 1770년의 『동국문헌비고』와의 관련성을 논증하지 않고, 추측성으로 『동국문헌비고』은 안용복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모순이다.

② 원록각서<sup>11)</sup>의 '朝鮮之八道'와 '朝鬱兩島監稅長'에 대해서는, 시모조는 '1696년 안용복은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령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일본에 밀항했다'고 한다.<sup>12)</sup> 원록각서에 의하면 안용복의 '조선지팔도'에 그려진 우산도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안용복은 일본인들이 우산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울양도감세장'<sup>13)</sup>이라는 관직명을 사칭했다고 한다.<sup>14)</sup> 우산도가 울릉도의 4분의 3정도 크기의 큰 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5)</sup>

7)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0-171.

8)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0-171.

9)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0-171.

10)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0-171.

11) 원래 명칭은 「원록9 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로서 원록9년(1696)에 일본에서 기록한 안용복의 2차 도일에 관한 기술이다. 본문에서는 「원록각서」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12)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0-171.

13) 이것은 시모조의 '조울양도감세장'에 대한 오류임.

14)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0-171.

15)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0-171.

시모조의 오류는 다음과 같다. 즉 안용복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영향을 받아 '朝鮮之八道'라고 하여 우산도가 조선영토라고 했지만, 우산도가 울릉도의 4분의 3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모조는 '朝鮮之八道'와 신증동국여지승람과의 관련성을 논증하지 않고 추측하는 것은 모순이다.

원록각서의 '朝鮮之八道'와 '朝鬱兩島監稅長'은 안용복으로 하여금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확인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시모조는 이처럼 명명백백한 것을 부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논증없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로는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한 것은 안용복의 밀항보다 반년 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안용복은 일본인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둘째로, 안용복의 교섭으로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영토가 된 적도 없다고 단정했다.<sup>16)</sup> 셋째로, 1711년 제작된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에는 현재의 죽서를 '소위 우산도'라고 명기되어 있다는 것이다.<sup>17)</sup>

시모조는 결론적으로 안용복이 본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sup>18)</sup> 그 이유는 우산도는 울릉도의 동남에 있는데 '동북'이라고 하고 있고,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은 안용복의 밀항사건과 공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우산도는 지금의 죽서를 가리킨다는 것이다.<sup>19)</sup> 여기서 시모조의 모순은 이들에 대해 아무런 논증 없이 공허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시모조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다. 즉, 첫째로 세종실록 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증보동국여지승람 등의 관찬 문헌에 의하면 조선조정이 조선시대 내내 조선의 영토로서 동해에 2개 섬이 존재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둘째로 안용복은 1차와 2차 도일에서 울릉도 이외에 또 다른 섬으로서 우산도를 눈으로 확인했고, 그 사실을 막부와 돛토리 번에 대해 한국영토임을 주장했던 것이고, 막부가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로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은 수토사로서 동해의 두 섬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의 독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죽서도'에다가 '소위 우산도'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독도를 찾지 못하고 추측성으로 우산도의 위치를 잘못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조선 조정의 인식이 아니고 박석창의 인식에 지나지 않는다.

## (2)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는 죽도인가”에 대한 비판

16)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0-171.

17)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0-171.

18)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0-171.

19)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0-171.

이 글의 필자인 시모조는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는 죽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세종실록지리지(1454)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40)의 울진현조에 '우산, 무릉 2섬, 현의 정동 해중에 있다'<sup>20)</sup>라는 기록이 있다. 한국은 우산도에 대해 『동국문헌비고』의 '우산도는 송도'라는 기록을 갖고 우산도를 송도라고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21)</sup> 그러나 1776년의 『동국문헌비고』에 '여지지에 의하면 왜가 말하는 소위 송도(지금의 독도)는 우산도(독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지지에는 '일설에 우산도 울릉도 원래 1개 섬만 기록되어있다. 따라서 우산도는 죽도(독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sup>22)</sup>

그런데 시모조는 한국이 잘못 해석하는 이유로서는 동국문헌비고의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송도'라는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23)</sup>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의 '우산, 울릉 2섬은 서로 보이는 거리에 있다.'라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울진조의 섬에 대한 기록상황은 조선반도에서 바라본 울릉도의 모습이라는 것이다.<sup>24)</sup> 그 예로 1693년 막부와 대마도가 조선반도에서 울릉도가 보였기 때문에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다는 것이다.<sup>25)</sup> 위에서 어느 하나도 시모조는 객관적인 논증없는 단순한 주장이다.

또한 '태종실록'에 울진현에서 우산도의 '수목과 모래가 보인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죽도(독도)에는 수목도 없고 모래도 없기 때문에 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는 죽도(독도)가 아니라는 것이다.<sup>26)</sup>

사실 김인우는 울릉도에서 돌아왔으면서도 이를 잘못알고 '우산도'에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우산도가 사람이 사는 섬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 김인우가 울릉도를 '우산도'로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시모조 주장의 오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시모조는 여기서 '여지지'에 대해 아무런 논증 없이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을 두고 말한다.'라고 단정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의 울진현조에 '우산, 무릉 원래 1개 섬'으로서 1도2명의 섬으로 되어있다.<sup>27)</sup>라고 하여 글의 핵심내용인 우산도, 울릉도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서로 잘 보인다'라는 부분을 무시하고 '일설에 의하면 두 섬은 한 섬이다'

20)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2-173.

21)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2-173.

22)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2-173.

23)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2-173.

24)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2-173.

25)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2-173.

26)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2-173.

27)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2-173.

라는 부분만 취하고 있다. 필요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 해석하고 있다. 또한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들고 나와서 '본 현에서 날씨가 맑은 날 높은 곳에 오르면 울릉도가 보인다'는 기록이 있으나, 우산도의 기록이 없다'라고 하여 우산도는 죽도(독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sup>28)</sup> 게다가 시모조는 '보인다'라는 것은 조선 실록의 기록 방식이라고 단정하고, '보인다'라는 표현만 있으면 모두 '울진현에서 울릉도가 보인다'는 것'을 해석한다.<sup>29)</sup>

둘째로, 15세기 초엽의 태종실록은 15세기 중엽의 세종실록에 반드시 영향을 주었고, 세종실록은 또 다시 반드시 16세기 중엽의 동국여지승람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18세기의 『동국문헌비고』의 경우는 그 전시대의 『여지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분명히 시대별로 서로 인식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반드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었다는 식의 해석은 모순이다. 전시대의 잘못된 인식을 후시대에 수정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15세기의 세종실록 지리지와 16세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그 시대 조선 조정의 인식이다. 15-16세기 동해에 2개의 섬이 조선영토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개의 섬은 울릉도와 독도뿐이다. 18세기의 『동국문헌비고』에 “왜가 말하는 송도는 조선영토로서 우산도”이라는 기록은 그 당시 일본이 처음으로 조선영토의 우산도를 알게 되어 일본에서 조선의 우산도를 송도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의 '여지지'는 그 시대의 독도에 대한 영토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 (3) “한국은 죽도의 명칭이 ‘우산도→석도→독도’로 변천했다고 하지만, 증거는 있는가”에 대한 비판

이 글의 필자도 시모조이다. 즉, ①시모조는 우산도에 관해서 한국이 우산도를 독도라고 하는 근거로는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의 울진현조에 '여지가 말하기를 우산, 울릉 모두 우산국의 땅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소위 송도(지금의 죽도)이다.'라는 것에 의한 것이다.<sup>30)</sup> 그래서 한국은 우산도를 독도라는 전제로 하고 있지만 우산도가 송도이고 독도라는 방정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1)</sup> 그 이유는 한국측이 의거한 '여지지'의 원전에는 '일설에 우산, 울릉 원대 1개의 섬'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우산도는 '여지도서'(18세기)나 김정호의 『대동지지』의 분

28)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2-173.

29)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2-173.

30)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4-175.

31)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4-175.

문에서 사라지고 울릉도만 남았다.’는 것이다.<sup>32)</sup>

시모조는 사료적 해석으로 ‘한국영토=독도’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기 위해 사료 자체를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만들기에 유리한 관련 없는 사료를 취사선택으로 대입시켜 올바른 사료 해석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사료 자체를 부정하여 한국조정이 남긴 모든 고문헌이 잘못되었고 한다. 특히 『동국문헌비고』도 안용복의 거짓 진술에 의해 내용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33)</sup>

② 석도에 관해서는 ‘한국측이 들고 있는 증거는 발음의 유사성이다. 칙령 41호의 공포는 1900년 10월 25일이다. ‘독도(獨島)’ 명칭이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904년 이후 일본인에 고용된 울릉도민이 독도 주변에서 강치잡이에 종사했기 때문이다. 사실 ‘독도(獨島)’라는 표기는 1904년 이후부터 사용되었는데, 그 이전에 나온 칙령 41호의 ‘석도(石島)’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sup>34)</sup>

사실 울릉도민이 1882년 이후 속칭으로 ‘돌섬’ 혹은 ‘독섬’이라고 불렀다. 이 토속명칭을 조선조정이 1900년 칙령 41호에 공문서 형식으로 ‘石島’라고 한자 표기한 것이다. 1904년의 독도가 1900년의 석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시모조는 칙령 41호가 제정될 때 시찰관 우용정의 『울도기』를 참고하여 울릉도의 범위를 ‘대략 145리’라고 했다고 단정했다. 그것은 ‘1882년 울릉도를 검찰한 이규원이 周回 145리라고 한 것과 동일하다. 이규원은 그 당시 ‘울릉외도’를 그렸는데, 울릉도의 방근(傍近)에는 죽도와 도항 2섬이 있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죽도’는 울릉도의 동쪽 2km 지점에 있는 竹嶼이고, 도항은 울릉도의 북동에 있다. 이규원의 울릉도에 관한 지리의 이해는 1883년 내무성 소서기관(少書記官) 檜垣直杖의 “울릉도출장복명서”에 첨부된 부속도를 답습했다. 1900년 시찰관 우용정과 함께 울릉도를 건너간 재 조선국 부산영사관의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가 제출한 “울릉도 산림개황”에 수록된 부속도에서도 울릉도의 속도는 죽도와 도항. 空島(孔岩)로 되어있다. 그리고 1910년 대한제국이 편찬한 『한국수산지』 제2집에서는 울릉군의 ‘주변제도’로서 죽도와 鼠項島(도항)와 孔岩을 들고 있다. 당초부터 90km나 떨어진 죽도(독도)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용정과 아카쓰카가 죽도(독도)에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조사는 울릉도 1도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도는 울릉도이고, ‘석도’가 독도라고 하기 전에 ‘도항’이 ‘석도’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

32)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4-175.

33)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4-175.

34)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4-175.



를 밝혀라'라고 주장한다.<sup>35)</sup>

시모조 주장의 다음과 같은 모순성을 갖고 있다. 즉 칙령41호 제정과 『울릉도』와의 관련성, 이규원이 1883년의 내무성 소서기관(少書記官) 檜垣直杖의 “울릉도출장복명서”를 답습했다는 것 등 이들 모두 아무런 논증이 되지 않았다. 『한국수산지』 제2집에서 울릉도의 ‘주변제도’에서 독도가 없는 이유는 독도는 울릉도의 주변 섬이 아니고 87km너 멀리 떨어져 있는 별개의 섬이기 때문이다. 사실 1889년 일본 해군성 수로국이 발간한 『일본수로지』에는 없고, 『조선수로지』에 독도를 포함시켰다.<sup>36)</sup>

사실, 1899년에 파견된 합동조사단은 일본인의 별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영토문제로 지금의 독도를 조사하러 간 것이 아니다. 따라서 1899년의 합동조사를 칙령41호 제정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칙령41호의 ‘석도’가 도항(관음도)이라면, 왜 이미 존재했던 ‘도항 혹은 서항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명칭인 ‘석도’를 갑자기 사용했을까? 이다.

사실 울릉도합동조사 이후, 『황성신문』은 조사내용을 보도했는데, ‘가장 두드러진 섬이 “죽도 우산도”’라고 보도했다.<sup>37)</sup> ‘가장’이라는 의미는 한 개의 섬을 말한다. 당시 이규원의 ‘울릉외도’의 ‘죽도’가 당시 청구도, 광여도 등에서 표기되었던 ‘소위 우산도’ 또는 ‘우산도’라는 명칭과 함께 1도 2명으로 명칭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칙령41호에서는 당시 일본의 침략을 우려하여 울릉도민이 속칭했던 ‘독섬 혹은 돌섬’을 한자로 표기하여 새로운 명칭 ‘석도’를 사용하여 현재의 독도의 소속을 명확히 표기했던 것이다.<sup>38)</sup>

그중에서도 시모조의 가장 잘못된 오류는 조선조정이 울릉도 개척을 시작한 계기가 일본인들의 잠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일본인들이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도항했고,<sup>39)</sup> 울릉도사람들은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울릉도만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는 것이었다.

35)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74-175.

36)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p. 253-254.

37) 「황성신문」 1899년 9월 23일자.

38) 최장근(2014) 「독도 명칭 : ‘우산도’가 ‘석도’로 전환되는 과정의 고찰」, 『한국영토 독도의 고유 영토론』 제이앤씨, pp.105-159.

39) 1899년 울릉도 합동조사 결과, 일본인 잠입 체류자는 57間に 남녀 합이 144명으로, 일본인 선박 11척이었다. 우용정, 「보고서: 鬱陵島査覇」,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지식산업사, p189.

### 3. '막부의 도항금지령에는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의 비판

(1)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을 때 죽도가 한국영토로 확인되었다'라고 한국의 주장은 옳은가”에 대한 비판

이 논지의 저자는 쓰카모토이다. 그는 '1696년 1월 27일 막부의 로주(老中) 安倍豊後守는 돗토리번에 대해 울릉도와 돗토리번을 다스리는 이나바(因幡)국과 호키(伯耆)국의 부속인 울릉도는 언제부터 두 나라의 부속 섬이였는가? 울릉도 이외에 양국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 라고 조회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의 에도 출장소는 다음날 “울릉도는 이나바, 호키국의 부속섬이 아니다. 요나고(米子) 사람 오야(大屋), 무라카와(村川)라는 자가 도항해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은 마스다이라(松平)가 호키국을 통치하였을 때 로주(老中)의 봉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이나바, 호키 양국의 부속 섬이 아니다'<sup>40)</sup>라고 답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막부는 최종적으로 오야, 무라카미 등에게 1696년 1월28일(양 3월 1일)자로 출어를 금지했다.'하는 것이다.<sup>41)</sup> 그런데 쓰카모토는 17세기말 '죽도일건'으로 인한 외교교섭은 울릉도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다. 독도는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국에서는 독도에 대한 영토인식도 없었다. 막부는 돗토리번으로부터 송도에 관한 정보를 얻으면서 송도에 대한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sup>42)</sup> 17세기말 사건으로 외교교섭을 통해 독도가 한국영토로 확인되었다고 하는 한국의 주장은 옳지 않다. 당시 울릉도에 대한 도해금지 는 대마도주 무네(宗)씨를 통해 행해졌는데, 그때에 독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17세기의 사건의 교섭대상은 울릉도뿐이었다.'라는 것이다.<sup>43)</sup>

이에 대한 쓰카모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즉, 막부와 돗토리번은 1696년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당시 막부가 양국정부 간의 영토분쟁에서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한국영토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막부가 도해면허를 준 것이 울릉도뿐이었기 때문에 울릉도의 도해면허를 취소한 것이 불과하고, 원래부터 조선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막부가 언급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쓰카모토가 독도만은 일본영토가 되었다는 주장은 옳지

40)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84-185.

41)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84-185.

42)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84-185.

43)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84-185.

않다. 이 사건의 단서를 제공했던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일본측에 주장했던 것이다. 당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 일본측에서 보면 울릉도 도항의 기항지로 존재했고, 한국측에서 보면,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도(독도)’가 동해에 존재하는 한국영토로 인식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만 독도가 작은 암초로서 울릉도처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큰 섬이 아니었기에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거론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을 포기했지만, 독도는 기항지로서만이 가치로 존재했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으로 존재하지는 않았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조선영토이지만, 울릉도는 분쟁의 대상이 되었지만, 독도는 분쟁의 대상이 아닌 조선영토이었던 것이다. 일본의 에도시대에 막부 혹은 돛토리번 어느 측에서도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을 갖고 있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2) “에도막부의 울릉도 도항금지령에서 죽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한국 영토로서 간주되었는가”에 대한 비판

이 글의 논자인 쓰카모토는 ‘대일평화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부인하고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하였다. 이런 경위가 공포되지 않아서 한국정부는 1954년 9월 25일 한국정부의 견해에서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로 결정된 것에 대해 한국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였기 때문에 한국영토로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대일평화조약에 독도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상 본도라고 할 수 있는 육지나 주된 섬(主島)의 경우는 운명을 같이 하는 작은 섬이라면 부속도(屬島)가 될 수 있다. 울릉도에서 87km나 떨어져 있는 독도는 속도가 될 수 없다. 고지도에 존재하는 울릉도에서 2km 떨어져 있는 우산도를 두고 울릉도의 속도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 울릉 2도’라고 되어 있는데, 앞쪽에 있는 섬이 뒤쪽에 나오는 섬의 속도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쓰카모토 주장의 모순은 다음과 같다. 즉, 당시 독도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축적되지 않았을 때 한국정부가 ‘속도론’을 주장한 적이 있었다. ‘속도론’만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 거주하는 울릉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독도에 대해 영토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독도는 울릉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울릉도의 속도라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안용복이 子山島의 영유권을 주장한 것처럼 울릉도를 모도로 하고 독도를 자도(子島)로 한 것처럼, 울릉도를 모도(母島)로 하고, 독도를 자도(子島)로 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고지도나 고문서를 보면 반드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 ‘우산, 울릉’으로 표기되고 있고, 이 동시에 등장한다.

때로는 '울릉도 외 1도'라고 표기하는 것도 울릉도와 독도의 특수한 관계를 말하고 있다. 반대로 고지도나 고문헌상에 일본의 오키섬과 독도와의 특수관계를 기록한 것이 없기 때문에 독도를 오키도의 속도라고 말할 수 없다.

17세기 막부의 울릉도 도항금지에서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제외되었다는 근거를 들면, 안용복의 자산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막부가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 19세기에 막부가 일본의 서해안에 '도항금지팻말'을 설치했다는 것, 일본이 1905년 러일전쟁 중에 은밀한 방법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편입조치를 단행할 때까지 단지 '송도'(독도)에서의 조업을 목적으로 도항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 (3) “안용복이 '일본의 관백(쇼군)에게 죽도를 조선영토임을 인정하도록 했다'라는 한국의 주장은 올바른가”에 대한 비판

이 글의 논자인 쓰카모토는 안용복의 공술은 허위이고 게다가 조선정부가 안용복의 행적을 부정했다는 것이다. 쓰카모토는 안용복의 공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숙종실록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3년과 1696년 2번에 걸쳐 일본을 방문했다. 첫 번째 도항은 1693년 안용복을 포함해 2명이 일본인에 납치되었고, 1개월간 요나고의 오오야택에서 머물다가 돗토리, 나가사키, 대마도를 경유하여 송환되었다. 두 번째 도항은 1696년 스스로 도항하였는데, 그때는 '강원도의 자산도가 송도이다. 관직을 사칭하여 뭔가를 소송하기 위해 왔다가 스스로 귀항했다. 그때 안용복은 월경죄로 비변사에서 조사를 받을 때 '울릉도에 일본선박이 많이 내왕했다. 자신은 “울릉도는 원래 조선영토이고 함부로 왜 왔느냐고 꾸짖었더니” 일본인이 “자신들이 송도에 사는 사람인데, 어찌다 고기잡이를 왔다. 지금 돌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송도도 조선의 자산도로서 조선영토인데 너희들이 그곳에 산다는 말은 무엇인가!”라고 하여 다음날 아침 자산도에 가보니 일본인들이 술을 걸고 있어서 야단을 치니까 일본으로 갔다. 그래서 그들을 추적하여 큰 풍랑을 만나 오키에 표류했다. 그때 도주가 입도의 이유를 물어서 '울릉, 자산 등의 섬을 조선의 경계로 정하고 관백이 서계를 주었는데, 아직도 경계를 침범하느냐고 따져서 그후 백기주에 가서 대마도의 도주가 관백의 서계를 빼앗았다고 진술했다.”라고 했다.<sup>44)</sup>

게다가 쓰카모토는 '숙종실록'에 의하면, 대마도 사신이 '작년 귀국사람이 소송하려고 했던 것은 조선에 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선 조정이 회의에서 대처방침으로 '만일 변명할 일이 있으면 통역관을 예도에 보내겠다. 무엇을 무서워해서 시끄러운 어민을 보낼까? 풍랑으로 백성이 무엇을 했더라도 조정이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일본에 알린 것으로 볼 때, 조선조정은 안용

44) 『肅宗實錄』卷30, 肅宗 22年 9月 戊寅條.

복의 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한, 일본의 주장은 그때 1696년 정월(1월) 일본어부의 울릉도 도항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안용복이 일본인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안용복의 행적을 부정하는 쓰카모토 주장의 모순은 다음과 같다. 즉, 일본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선지팔도’에서 볼 수 있듯이 안용복은 1696년 2차 도일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강원도의 영토임을 일본측에 분명히 제시했다는 기록이 있다. 막부는 안용복의 2차도일 이후 울릉도 도항금지령을 내렸다. 독도에 대해서는 도항면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유권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게다가 당시의 독도는 울릉도를 도항할 때 단지 기항지로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안용복이 영유권을 주장한 독도도항에 대해서는 도항하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를 할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조선영토였던 것이다. 그래서 막부는 독도에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 조정에서는 안용복의 활동을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종실록과 동국여지승람 등을 보더라도 조선 조정이 울릉도와 독도를 포기한 적이 없었고, 이 문제로 월경한 안용복을 심문하였지만, 월경죄에 대해 영토문제 공헌을 인정하여 극형에 처하는 것은 피하고 선처로 유배지로 보내졌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용복의 죄상은 월경죄를 따졌던 것으로 일본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유배지로 보내진 것은 아니다. 쓰카모토의 주장처럼 안용복의 행위가 조선조정으로부터 부정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막부가 이미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던 1696년 정월에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났다고 하는 안용복의 주장을 허구라고 하지만, 만일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다고 하더라도 불법도항은 얼마든지 있다. 오야, 무라카와 가문도 1회용 도항면허를 가지고 70여 년 간 불법으로 울릉도를 도항했던 것이다.<sup>45)</sup> 명확하지 않은 추론으로 당시의 사정을 잘 기록한 역사적 사료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 4. ‘명치정부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적이 없다’의 비판

-“한국이 ‘죽도=조선영토’의 근거로 들고 있는 1877년의 ‘태정관지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

45) 池内敏(2008.2) 「安龜副と鳥取藩」 『鳥取地域史研究』 第10号, pp.17-29.

이 글의 논자인 쓰카모토(塚本)는 '죽도약도'에 표기된 송도가 '일본해 내 죽도 외 1도 지적편찬방위'(시마네현)의 '외 1도'가 '송도'임을 명확히 인정했다.<sup>46)</sup> 즉 내무성이 '시마네현의 문의를 있어 조사한 결과 일본과 관계없다고 생각되지만, 판도의 취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을 위해 문의한다.'라고 하여 태정관(후일의 내각부)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내각부는 '울릉도와 외1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지시했다. 그런데 17세기 당시 조선국에서는 독도에 대한 영토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막부와 조선과의 교섭은 울릉도에 대한 것으로 독도에 관한 언급은 없다.<sup>47)</sup> 또한 '죽도(울릉도) 소관에 관해서 시마네현으로부터 별지의 문의를 있어 조사해본 바'라고 한 것으로 보아 '외 1도'와 설 명자료에 있는 '송도'라는 명칭에 대해 무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메이지 시대 때에 울릉도를 '송도'로 표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양지도와 해도'에 의해 울릉도를 송도로 부르는 호칭이 생겨났다. 송도는 에도시대의 호칭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에서는 서양 기원의 지식이 들어와서 울릉도를 송도라고 했다.<sup>48)</sup> 그리고 1876년 武藤新平가 외무성에 제출한 '송도개척원', 1877년 시마네현 출신 戶田敬義가 동경부에 제출한 '竹島渡海之願' 등에 등장하는 송도와 죽도는 모두 울릉도이었다.<sup>49)</sup> 1876년 齋藤七郎兵衛가 블라디보스톡 주재 무역사무관 瀨脇壽人에게 '송도개척원서 및 건언'을 제출했고, 이것을 瀨脇가 1877년 외무성 외무경에게 상신했다. 이에 대해 외무성 공신국장 다나베 타이이치(田辺太一)가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로서 일본판도가 아니다. 사이토의 요청을 허가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sup>50)</sup> 1881년 11월 大屋兼助 등이 출원하는 형태로 시마네현으로부터 내무성과 농상공부에 대해 '일본해 내의 송도개척 문의'가 제출되었다. 이에 대해 내무성은 1877년의 태정관지령을 첨부하여 외무성에 조회한 뒤, 외무성에 회신한 내용 중에 '조선국 울릉도 즉 죽도 송도의 건에 관해서'라고 되어 있다.<sup>51)</sup> 내무성은 1882년 1월 시마네현에 대해 '서면 송도의 건은 가장 먼저 지령한 대로 일본영토가 아님을 알아둘 것 따라서 개간의 건은 허가할 수 없다.'라고 지령했다.<sup>52)</sup>

또한 쓰카모토는 이상 사료를 종합해 본 결과, 1877년의 태정관 지령은 죽도(울릉도) 및 명칭 상 '외 1도'(송도, 이것도 울릉도)에 관해서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죽도(독도)를 일본과 관계없다고 하는 주

46)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90-193'

47)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90-193'

48)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90-193'

49)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90-193'

50)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90-193'

51)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90-193'

52)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90-193'

장은 시마네현 문의의 첨부자료에만 의존한 해석, 혹은 '송도'라고 하면 늘 독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고정관념에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sup>53)</sup> 다시 말하면, '기죽도략도'는 울릉도(죽도)와 송도(독도)로서 시마네현의 인식이다. 따라서 1877년 태정관문서는 메이지정부의 인식으로서 시마네현의 인식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한 송도는 독도, 죽도는 울릉도라는 주장은 고정관념에 의한 해석이라는 것이다.<sup>54)</sup>

태정관문서에 관한 쓰카모토 주장의 모순성은 다음과 같다. 즉, 이상처럼 메이지정부가 굳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라고 하지 않고 「죽도(울릉도)와 외1도(송도)」라고 한 것은 울릉도 주변을 왕래하던 관련 일본인들이 호칭의 오류를 범하여 울릉도를 「송도」라고 호칭하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이지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라는 2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죽도와 외 1도」라고 표기했던 것이다. 실재는 '죽도와 외 송도' 혹은 '죽도와 송도'라고 표기해야 했다. 여기서 「외1도」라고 표기함으로써 오히려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 5. '1900년의 칙령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다'의 비판

### (1) 한국의 1900년의 칙령에 있는 '석도'는 죽도인가"에 대한 비판

이글의 논자인 쓰카모토(塚本)는 칙령41호의 석도가 오늘날의 독도라는 논증이 되면 1905년 일본보다 먼저 한국이 독도를 관할구역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sup>55)</sup> 또한 한국은 1438(세종20년)이후 울릉도를 무인도화 했지만, 조선왕조가 수년마다 관리를 파견하여 순견했다. 일본인의 도항 때문에 1882년 개척민을 파견하여 개척하여 최종적으로 군을 설치하여 행정구역에 포함시켰다고 했다.<sup>56)</sup> 그리고 1882년 이규원은 고종황제가 '송죽도, 우산도'를 조사라는 명령을 받고 성인봉에 올라 독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항과 죽도'의 존재를 보고했다. 또한 1899년 우용정의 울릉도조사에서는 작은 섬을 조사하지 않았다.<sup>57)</sup> 우용정의 보고를 받은 참정내부대신 이건하는 칙령 안에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에 관한 청의서'에 울릉도의 범위를 '세로 80리, 가로 50리'라고 하여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돌섬의 방언이 독도

53)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90-193'

54)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90-193'

55)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94-195'

56)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94-195'

57)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94-195'

라는 설명은 부족하다.<sup>58)</sup> 그리고 전후 신문에 거문도의 노인이 젊을 때 항해 중에 섬을 발견하고 선배로부터 '石島'라고 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관점에 불과하다.<sup>59)</sup>

칙령41호에 대한 쓰카모토 주장의 모순성은 다음과 같다. 즉, 고종황제가 이규원 검찰사에게 '송죽도, 우산도'를 조하라고 명령했으나, 이규원은 '죽도와 도항'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러나 고종이 알고자 했던 '송죽도, 우산도'를 확인하지 못했다. 독도는 연중 50여일정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섬이기에 마침 이규원의 조사 때에는 독도를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규원은 울릉도 주민의 전언으로 독도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한다.<sup>60)</sup> 또한 우용정의 울릉도 조사는 그 목적이 울릉도의 벌목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조사였기에 독도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칙령41호에 '석도'라는 명칭을 삽입한 경위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사료적 검증을 못했다. 하지만 20여 년간 울릉도에 거주했고, 군수직을 역임했던 개척민 배계주가 울릉도를 방문한 우용정에게 건의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1906년의 황성신문에 발표된 '울도의 배치전말'을 보면 통감부가 1900년에 조칙된 칙령41호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칙령에서 조처한 「석도」가 1906년 당시의 「독도」임을 명확히 했다. 그래서 통감부도 일본의 「죽도」 편입조치를 부정하는 대한제국정부로부터의 이의 제기를 부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 (2) 한국의 1900년의 칙령으로 '죽도'는 한국영토가 되었는가"에 대한 비판

이 글의 논자인 쓰카모토(塚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즉,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고시 40호로 국제법의 의거한 무주지 선점이론으로 영토를 취득했다. 그러나 한국은 1900년 칙령41호에서 '석도'가 '독도'라고 하는 논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에 의해 영토를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은 17세기 1696년 죽도(울릉도)도항금지령이 내려질 때까지 막부의 허가를 받고 울릉도에 도항할 때에 독도에서 어업에 종사했다. 그러나 경제적인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1903년 일본인이 조업할 때까지 200년간 조업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은 1900년 전후해서 국가차원에서 독도를 점유했다는 행위가 없다. 일본이 경우 일본국민(나카이)이 점유한 것을 일본국가가 인정했다. 그러데 한국의 울릉도민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어업에도 종사하지 않고 오히려 1904년 일본인에 의해 고용되어 강제조업을 위해 독도에 들어갔다. 그리

58)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94-195'

59)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94-195'

60) 李奎遠의 『鬱陵島檢察日記』,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p. 180.



고 독도에 대해 한국인이나 일본인을 규제했다는 기록도 없다. 단지 일종의 법령에 해당하는 '울릉도절목'에서 1905년 수출품에 독도에서 잡은 강치의 가죽, 기름, 육질이 있었다고 하여 상품에 대한 과세는 섬을 실효적으로 점유했다는 논증이 된다고 주장하는 설도 있지만, 그 '과세'는 강치를 울릉도에서 가공한 상품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독도와 무관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1905년 편입조치를 행한 후 시마네 현이 어업규칙을 개정하여 독도에 대해 어업허가제를 실시했다. 감찰을 교부하여 국유지의 사용료를 매년 징수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한국은 칙령의 '석도'가 독도라고 하더라도 한국은 점유행위가 결여되어 영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실효적 점유에 대한 쓰카모토 주장의 모순성은 다음과 같다. 즉, 우선, 국제법적으로 합법하다고 주장하는 시마네현고시 40호는 러일전쟁 중에 불법으로도 취한 것이기에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의해 일본영토에서 박탈된다. 1906년 대한제국은 이런 사실을 알고 일본의 편입조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마네현고시에서 독도를 무주지라고 했는데, 사실 태정관문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영토와 무관하다고 했던 것으로 보더라도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였던 것이다.

둘째로는 한국은 칙령41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효적 지배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영토취득이 불가능하지만, 일본은 실효적 지배를 했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카이 요사부로이 강치잡이는 본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영토 독도에 대한 강치 약탈행위이다. 1905년 이후 시마네현고시 40호이후의 강치잡이는 일본정부가 도취한 조선영토 독도에서 행해졌기에 약탈행위에 해당한다.

셋째, 「울릉도절목」에 의하면 강치를 일본에 수출할 때 과세를 부과했다는 기록은 한국이 강치가 서식하는 독도를 관리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일본문헌인 태정관문서에서 메이지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히 한 것을 보더라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반면 1900년 칙령41호로 한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독도에서의 나카이의 강치잡이는 한국영토 독도에서 살고 있는 강치를 은밀히 노략질해간 행위인데, 그것을 실효적 지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에 있어서는 독도가 2개의 암초로 된 무인도였기 때문에 별도로 크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섬이 아니었다. 그래서 칙령41호로서 행정구역에 편성하여 국토에 대한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독도를 수호해왔다. 그것은 1906년 한국정부가 일본의 '죽도'편입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통감부에 강력히 항의했다는 사실로도 충분하다.<sup>61)</sup>

## 6. '1905년 일본의 죽도 편입조치는 정당했다'의 비판

—“이미 영토권이 있었던 것을 1905년에 영토편입조치를 취한 것은 불법인가”에 대한 비판

이글의 논자인 나카노(中野)<sup>62)</sup>는 ‘한국은 칙령 41호’를 가지고 영토를 재확인했다고 하여 1905년 일본의 편입조치를 불법이라고 한다고 했다.<sup>63)</sup> 한국의 논증은 칙령의 ‘석도’가 토속명칭으로서, 돌섬의 의미로서, 현재는 ‘독도’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sup>64)</sup>

나카노는 칙령41호의 석도가 독도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①울릉도의 현지 도민이 돌섬이라고 한 문헌사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문헌사료에 독도의 특징으로서 ‘돌과 같은 섬이다’라는 문헌사료가 없다.<sup>65)</sup> 칙령 발령 이전에 독도를 석도하고 불렀다고 하는 문헌기록이 없다.<sup>66)</sup> ②1882년 울릉도 개척민들은 오직 농업에 종사했다. 칙령 발령 시점에 어업에 종사했다는 문헌사료가 없다. 따라서 한국은 칙령41호의 ‘석도’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 일본의 ‘시마네현고시 41호’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sup>67)</sup>

‘석도’는 독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나카노 주장의 모순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로서 일본의 군함일지에서 1904년 니이타카(新高)호가 ‘獨島라고 쓴다’고하는 기록이 있다.<sup>68)</sup> 일본이 편입 조치했다고 하는 1905년의 시마네현40호 이전이다. 이미 그 시점에 오늘날 사용하는 獨島라는 명칭이 한자표기까지 완전히 정착되었다. 獨島는 토속명칭이다. 1882년 울릉도 개척시점에서 개척민의 80%가 ‘돌섬(石島)’을 ‘독도’라고 부르는 전라도에서 이주해왔다. 울릉도 주변의 섬 중에 돌섬(石島)이라고 부를만한 순전히 돌로 된 섬은 없다.

둘째, 1882년 개척민이 어업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울릉도에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육지에서 217km를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이다. 울릉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고작 87km에 불과하다. 또한 1900년 시점까지 많은 일본인들이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내왕하였기 때문에 울릉도 거주민들은 일본인들을 통해서라도 독

61) 『大韓毎日申報』第1冊, 「報告書号外」, 양태진편(1979) 『韓國国境領土關係文獻集』법경사.

62)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98-199.

63)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98-199.

64)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98-199.

65)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98-199.

66)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98-199.

67)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편(2014) 『죽도문제 100문100답』. pp. 198-199.

68) 『軍艦新高戰時日誌』1904년 9월 25일.

도의 존재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셋째로, 논자인 나카노(中野)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1906년 시마네현 관리들이 울릉도에 내왕하여 처음으로 독도침탈 소식을 심홍택 군수에게 알렸을 때, 심군수는 「본군 소속 獨島」가 일본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을 중앙정부에 긴급으로 알림으로써 대한제국이 독도에 대한 영토인식을 명확히 하여 내부대신 이지용의 명의로 통감부에 강력히 항의하여 1900년 칙령41호에 의해 독도가 행정 조치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던 것이다.

## 7. 맺으면서

본 연구는 ‘죽도문제연구회’가 편찬한 ‘100문 100답’중에서 “한국 고지도·고문헌의 ‘우산도=석도=독도’를 부정하는 부분에 대해 논증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본측은 ‘한국 고지도의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고 한다.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등 한국의 문헌이나 고지도에 보이는 ‘우산도(于山島)’는 울릉도의 별칭이라고 주장한다. 죽도의 명칭이 ‘우산도→석도→독도’로 변천했다고 하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 일본측은 우산도는 울릉도의 별칭이고 석도는 관음도이고, 독도와 무관하다고 했다.

둘째로, 일본측은 ‘일본 고지도의 독도는 일본영토이다’라고 한다. “에도시대 문헌에서는 죽도가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즉 “伊能忠敬의 지도, 長久保赤水의 지도, 林子平의 그림지도 등 모든 지도는 독도가 한국영토로서의 논증이 아니고 일본영토로서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셋째로, 일본측은 ‘막부의 도항금지령에는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을 때 죽도가 한국영토로 확인되지 않았고, 울릉도의 속도로서 한국영토로서 간주되지 않았다. 또한 안용복이 ‘일본의 관백(쇼군)’에게 죽도를 조선영토임을 인정받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했다.

넷째로, 일본측은 ‘메이지정부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일본의 주장은 ‘태정관문서’ 등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토론을 부정하고 있다.

다섯째로, 일본측은 ‘1900년 칙령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다’고 한다. 1900년의 칙령에 있는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1900년의 칙령이 독도라고 하더라도 실효적 지배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한국영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반면 ‘1905년 일본의 죽도 편입조치는 정당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1905년 ‘죽도’ 편입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1905년 이전의 한국 영토론을 부정한 것이다. 100문100답을 집필한 죽도문제연구회원 중에는 국가가 고용한 어용학자를 제외하면 연구만을 전업으로 하는 연구자가 없기 때문에 학술적인 논증이라 할 수 없다.

## 【참고문헌】

- 박병섭(201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관점」, 『한일 양국의 관점에서 본 울릉도 독도 국제심포지움』, 대구한의대학교 안용복연구소주체, 2011년 12월 2일,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관619호, p.156.
- 송병기(1999) 『鬱陵島와 獨島』 단국대학교출판부.
- 송병기(2004) 『독도영유권 자료선』 자료총서34,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지식산업사.
- 양태진편(1979) 『韓國國境領土關係文獻集』 법경사.
-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p. 253-254.
- 최장근(2014) 『한국영토 독도의 고유영토론』 제이앤씨, pp.105-159.
- 池内敏(2008.2) 「安龍副と鳥取藩」 『鳥取地域史研究』 第10号, pp.17-29.
- 大西輝男·권오엽·권정욱김(2004) 『獨島』제이앤씨, pp. 263-264.
- 奥原碧雲(1906) 『竹島及鬱陵島』 松江：報光社.
- \_\_\_\_\_ (1906)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伝』.
- \_\_\_\_\_ (1907) 「竹島沿革考」, 『歴史地理』 第8卷 第6号.
-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 \_\_\_\_\_ (1953) 『竹島の領有』 日本外務省條約局.
- 島根縣編,=田村清三郎(1954) 『島根縣竹島の 研究』.
- 下條正男(2005)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縣民會議.
- \_\_\_\_\_ (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親書377.
- 田村清三郎(1965) 『島根縣竹島の新研究』 島根縣總務部總務課.
- 第3期竹島問題研究會編(2014) 『竹島問題100問100答』, 『WILL』 2014年3月号増刊, ワック株式会社, 2014.3.14, p. 170-171.
- 內藤正中·金柄烈(2007) 『歴史的檢証獨島·竹島』岩波書店.
- 內藤正中·朴炳涉(2007) 『竹島=獨島論爭—歴史から考える—』新幹社.
- 內藤正中(2011) 「1905年の竹島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4호 『軍艦新高戰時日誌』 1904年9月25日.
- 『肅宗實錄』 卷30, 肅宗22年9月戊寅條.

## 要 旨

本研究は、日本の竹島問題研究会が‘100問100答’を作って韓国や日本に散在している古地図・古文獻上の「于山島=石島=独島」論を否定したことを批判したものである。日本は1905年2月22日に韓国の領土であった独島に対して島根県の告示40号をもって竹島という名称で無主地であるとし日本の領土に編入する措置をとった。それも韓国が日露戦争の戦場となった混乱な状況を悪用して列強の批判を憂慮して中央政府ではなく地方の島根県の告示で隠密に行われた。日本がその措置の正当性を主張するためには編入措置をとった1905年以前の韓国領土としての証拠をすべて否定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竹島問題研究会がそれを支持するために作ったのが百問百答であった。その内容についてはまず“韓国の古地図の中の于山島は独島ではない。” “日本の古地図の中の独島は日本領土である。” “幕府の渡航禁止令には独島は含まれていなかった。” “明治政府も独島を韓国領土として認めなかった。” “1900年の勅令にあった石島は独島ではない。” “1905年の日本の竹島編入措置は正当であった。”とのことであった。実際、日本の論理は客観性の乏しい矛盾に満ちた虚構であった。韓国の領土主権を否定するための歴史的事実を否定する作業であったからだ。さらに、この作業に携わった竹島問題研究会の者の中では国家や地方政府の機関で雇われた誤用学者はあるものの、研究を専業とする真の研究者はなかったからだ。

Key Words : 100問100答、竹島問題研究会、下条正男、独島、竹島問題、石島

투 고 : 2014. 5. 31  
1차 심사 : 2014. 6. 14  
2차 심사 : 2014. 7. 5